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58호
2. 발 의 자 : 송경택 의원(찬성 21명)
3.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상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문화도시”로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총 5개임.
-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변경함.

Ⅳ.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나.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서울시는 2017년 8월 1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6호)을 통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조례명을 포함하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고자 하였음.¹⁾
- 그러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타 시·도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없고,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며, ▶‘문화시민도시’는 ‘문화도시’정책의 하위 개념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음.²⁾
- 이에 따라 2017년 9월 21일 전부개정 시에는 조문 중 ‘문화도시종합계획’과 ‘문화도시 정책자문위원회’만 각각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

1)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6.)에서 수립한 정책비전의 ‘문화시민도시’를 반영함.

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8.3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86호).

- 이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2023년 5월 22일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고 상위법령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정비하였으나, 동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례에는 여전히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어 정비(2023.5.22.) >

해당 조항	현행	개정
제13조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15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인용한 5개 조례(조문 5건)를 대상으로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1조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2조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3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제5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4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
제5조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3항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인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조례간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용어 변경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만큼 서울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02-2180-8055